



3. 노인장기요양 등급 구분

장기요양등급의 구분 ?
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서 **6개월 이상** 혼자서 일상생활을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(**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**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.

장기요양 1등급



일상생활에 **전적**으로
도움 필요
(장기요양인정점수가
95점 이상)

장기요양 2등급



일상생활에 **상당부분**
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
(장기요양인정점수가
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)

장기요양 3등급



일상생활에서 **부분적**으로
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
(장기요양인정점수가
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)

장기요양 4등급



일상생활에서 **일경부분**
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
(장기요양인정점수가
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)

장기요양 5등급



지매원까지로서
(노인성질병으로 인정)
(장기요양인정점수가
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)

장기요양 인지기원등급



지매원까지로서
(노인성질병으로 인정)
(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
미만인자)

문의사항 :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-1000